

#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규정

개정 2019.05.22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다문화가족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정의)

“다문화가족 학생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을 말한다.

### 제3조 (적용)

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적용한다.

### 제4조 (신상 관리)

다문화가족학생 지원부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신상의 관리를 총괄한다.

### 제5조 (장학금지급)

다문화가족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.

### 제6조 (다문화가족학생 이해 프로그램)

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으로 비 다문화가족학생과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등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배려)

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다문화가족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8조 <삭제 2019.05.22.>

제9조 <삭제 2019.05.22.>

제10조 <삭제 2019.05.22.>

제11조 <삭제 2019.05.22.>

제12조 <삭제 2019.05.22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11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